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권 고

제 목 직원 채용 부적정  
소 관 기 관 (사)○○○○ 협회  
조 치 기 관 (사)○○○○ 협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사)○○○○ 협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였다.

[표] 직원 채용 현황

채용 일시	채용 인원	채용직급 (성명)	공고 및 접수기간	최초 계약기간	비고
2016년 12월	1	전무급 (***)	-	2017. 1. 1. ~ 2017. 12. 31.	퇴직
2017년 3월	1	대리급 (@@@)	-	2017. 4. 1. ~ 2017. 12. 31.	퇴직
2017년 7월	2	대리급 (\$\$\$, ###)	5일	2017. 8. 21. ~ 2017. 12. 31.	퇴직1, 재직1
2017년 12월	1	전무급 (%%%)	-	2018. 1. 1. ~ 2018. 12. 31.	재직
2018년 5월	1	대리급 (&&&)	3일	2018. 6. 14. ~ 2018. 12. 31.	재직

※자료 : (사)○○○○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 운영규정」 제14조, 제16조, 「○○○○ 인사규정」 제2조 내지 제4조에 따르면 채용의 최종 결재권은 회장에게 있고, 임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지능, 학식 또는 실기 등에 대한 시험을 행하며 필요에 따라 서류전형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전직에서 부정행위,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해직된 자 또는 권고 해직된 자,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기타 본 협회에서 채용 결격사유로 인정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 협회는 도의 보조금을 받아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 직원 채용시 채용분야 및 인원, 응시자격요건, 채용절차(시험 또는 서류전형), 접수 및 진행 일정 등을 포함하는 직원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한 협회 홈페이지 채용공고 등의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했어야 했다.

### 3. 위법부당 사항(확인된 문제점)

#### 가. 채용계획 미수립

그런데도 (사)○○○○ 협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아래 [표 1]과 같이 인력채용 시 자체 「운영규정」 및 「인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 각종 채용방법 및 절차 등을 결정하는 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규정에 따라 최종 결재권자인 회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의 채용방법 결정 등이 포함된 직원 채용계획 수립 없이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있다.

#### 나. 채용 공고 등 부적정

(사)○○○○ 협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직원을 채용하면서 아래 [표 1]과 같이 단, 두 차례만 자체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시행하였고, 공고 및 접수기간도 3일내지 5일의 기간으로 공무원 경력직 채용공고 기간 10일에 비해 짧은 기간으로 인해 응시자 참여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

#### 다.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부적정

(사)○○○○ 협회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두 차례 서류전형 심사를 진행 하면서 응시자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등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서류전형의 합격자 결정 관련 서류가 일체 없으며, 응시자 관련 일부 서류도 비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직원 채용 공고문에는 “언론, 홍보, 마케팅, 국문학 관련 전공자 우대”한다는 지원자격에도 불구하고, 특히, 2018. 5월 직원채용시 우대대상 3명(국문학전공 2, 경영학전공 1)을 면접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등 서류전형 합격자를 부당하게 결정한 사실이 있다.

※ 2017년 7월 최초 신청 서류 미확인(서류 부존재)

## 라. 채용절차 없이 직원 채용

(사)○○○○ 협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서류전형으로 같음하여 채용하도록 되어있는데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직원 채용시 채용공고 및 서류전형 등 최소한의 채용 절차마저도 거치지 않은 등 채용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한 사실이 있다.

[표 1] 직원 채용 절차 준수 여부

채용 일시	채용 인원	채용직급	채용절차 준수 여부				비고
			채용 계획 수립	채용 공고	채용 결정 사유 조회	면접	
2016년 12월	1	전무급 (***)	×	×	×	×	
2017년 3월	1	대리급 (@@@)	×	×	×	○	
2017년 7월	2	대리급 (\$\$\$, ###)	×	○	×	○	
2017년 12월	1	전무급 (%%%)	×	×	×	×	
2018년 5월	1	대리급 (&&&)	×	○	×	○	

※자료 : (사)○○○○ 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 협회 회장은

- ① 앞으로, 채용관련 규정 등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투명한 직원채용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또한, 본 협회의 제규칙 및 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고의·중과실로 협회 손실 등에 대해서는 직원 신분상 조치(징계 등)가 가능하도록 ○○○○ 인사규정 정비 등을 「권고」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고)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성립 전 세출예산 부당 집행

소 관 기 관 (사)○○○○○○○○협회

조 치 기 관 (사)○○○○○○○○협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사)○○○○○○○○협회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편성 및 승인을 위하여 [표]와 같이 매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거쳐 집행하였다.

[표] 이사회 및 총회 개최 현황

회계년도	예산편성일시	의결일시		예산성립전 집행액	비고
		이사회	총회		
2015년	-	2015. 2. 25.	2015. 2. 25.	49,742,027	
2016년	-	2016. 2. 19.	2016. 2. 19.	74,716,264	
2017년	-	2017. 2. 23.	2017. 2. 23.	63,596,822	
2018년	-	2018. 2. 22.	2018. 2. 22.	52,362,370	

※자료 : (사)○○○○○○○○ 제출자료 재구성

※예산편성은 이사회 전결권으로 인해 결재누락되었음

###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 정관」 제22조 및 제29조에서 총회 및 이사회에서는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정관」 제34조, 제35조에서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을 집행했어야 했다.

### 3. 위법부당 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 협회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표]와 같이 예산편성 사무 전결권이 이사회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예산편성 관련 결재서류 없이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월 중순경에 비로소 당해 예산에 대한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결하여 확정하였으며, 더구나 이로 인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4년간 총 240,417,483원의 세출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 협회 회장은

앞으로,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예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예산 성립 전 사업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 의 요 구

제 목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지원단체 선정 부적정

소 관 기 관 (사)○○○○○○○○협회

조 치 기 관 (사)○○○○○○○○협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사)○○○○○○○○협회는 2017년 기업과 예술 결연사업을 목적으로 [표]와 같이 “○○○○○○○○협회 매칭사업” 사업을 수행을 위해 경상남도로부터 도비보조금 700 백만 원과 기업지원금을 교부받아 도내 다수 문화예술 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표] 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협회 매칭사업	127개 문화단체 매칭사업	2,280	-	700	180	1,400	

※ 자료 : (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심사 운영규정」 제3조 및 제6조에 의하면 사업 참여 대상 예술단체는 경상남도 내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 문예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창작활동 실적 및 지속성이 인정되는 예술단체,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등으로 하고, 지원 기관과 신청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 2017. ○○○○○○○ 매칭사업 운용계획」에서 설립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관 및 단체와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이 없는 단체는 지원대상 예술단체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균등한 문화향유기회 제공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도비 배분(지원)을 시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해당 시군의 배분액 범위 내에서 단체별로 재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 3. 위법부당 사항(확인된 문제점)

#### 가. 심사위원 선정 부적정

그런데도 (사)○○○○○○○협회는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2017년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심사 시 사업 참여 신청 예술단체인 “○○전수관” 대표 ★★★를 위원으로 선정한 사실이 있다.

#### 나. 지원대상 예술단체 선정 부적정

(사)○○○○○○○협회는 2017년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지원 예술단체를 선정 하면서 예술단체 매칭펀드 지원 신청 접수 시 언론보도 등 공익활동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지원 제외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증빙할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를 부실 하게 진행하게 하는 등 형식적 심사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이 없는 문화예술단체인 “◆◆ 챔버 오케스트라”, “극단 ○○”, “▲▲▼▼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 앙상블”, “♡♡시 풍물단체 연합회”를 지원대상 예술단체로 부당하게 선정하였으며,

2017년 설립하여 설립일로부터 1년 미만 단체인 “▲▲▼▼ 미술대전 운영위원회”를 지원대상 예술단체로 선정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17년 예술지원 매칭펀드사업 지원 2차 심사 시 인구수가 많은 ♣♣시 1개 업체 8백만원, ◆◆시 1개 업체 9백만원을 지원한 반면에 ○○군 1개 업체 15백만원, ◀◀·○○○○군 각 1개 업체 9백만원, ☞☞군 1개업체 15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도비 배분(지원) 기준과 맞지 않게 부적정하게 지원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협회 회장은

앞으로,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지원단체 선정 시 배제대상 단체가 지원대상 단체에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자 직무교육 및 심사위원 사전교육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시 정 요 구

제 목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추진 부적정(외유성 관광경비 집행)  
 소 관 기 관 (사)○○○○○○○○협회  
 조 치 기 관 (사)○○○○○○○○협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사)○○○○○○○○협회는 2017년에 [표]와 같이 도민들에게 균등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기업이 후원하는 예술단체에 도비를 매칭 지원하는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술단체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계	기업지원금	도시비지원금	
2017	♣♣시 남성합창단	1.◆◆□ 교포 위로 해외연주 2.제11회 정기연주회	24,000	15,000	9,000 (시비 2,000)	◆◆□교포 대상 해외연주, 제11회 정기연주회
	경남▶▶▶ 밴드	♡♡♠♠테크 창립 30주년 기념식	8,000	5,000	3,000 (시비 1,000)	축하예배, 회사창립 기념행사 등

※ 자료 : (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 2.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보조금 관리 부적정(외유성 관광경비 집행)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비 사용 지침」에 따르면 지방재정법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와 제32조의8,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5조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17. 9.25. 시행)」 그리고 위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이나 교부조건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경남도 ○○▣▤▥ 매칭사업 운용계획」에 따르면 지원대상 예술단체 선정 기준에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종교 교리 전파를 위한 행사 등에는 지원 제외토록 되어 있다.

또한 (사)○○▣▤▥협회의 「예술지원매칭펀드 사업비 사용지침」에 지원사업 목적과 내용과 관련 없이 매칭펀드 사업비를 사용할 경우 지원금 부적정 집행에 해당되어 매칭펀드 지원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다.

**나. 위법부당 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협회에서는 ♣♣시남성합창단으로부터 문화예술행사 비용 보다는 [표 1]과 같이 전체 일정 5일 중 4일 이상을 ▶▶▷▷ 관광, 전신마사지 같은 외유성 관광경비로 집행한 내역과 당초 현지교포와 유학생 대상 한국 민요와 대중가요 공연계획과 다르게 ♥♥♥ 한인교회에서 성가 위주의 종교색채가 짙은 공연을 한 2017년 매칭사업비 정산서를 제출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정산 적정하다고 그대로 인정해 주는 등 2017년 ♣♣시남성합창단 「◆◆▣ 교민 위로 연주회 사업」에 대한 감독과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 교민위로 연주회 내역

구 분	당초계획	정산내역
일 시	2017.11.24.(금) 저녁	2017.11.26.(일) 오전
장 소	♥♥♥ ▣▤▥호텔연회장	◆◆▣ ♥♥♥ 한인교회
연주내용	정서적인 한국 민요와 대중가요	교회 성가 위주 (순례자 합창, 주는 나의 피난처 등)
일 정	2017. 11.24(금) : 김해 → ♥♥♥ → ♥♥♥♥(수상인형극관람) 2017. 11.25(토) : ♥♥♥♥ 관광 → ♥♥♥♥ 2017. 11.26(일) : 오전, ♥♥♥ 한인교회 공연 → 오후, ♣♣호수관광 → 저녁, 전신맛사지 2017. 11.27(월) : 오전, 난빈(♣♣관광) → 오후, ♥♥♥ 쇼핑센터 → 석식 후 공항 2017. 11.28(화) : 01:00 ♥♥♥ → 김해 ※ 당초계획에 세부일정은 미제출	

※자료 : (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 3. 결연기업 기념행사에 부적정 사업 추진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경상남도 「 매칭사업 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업이 예술단체를 기업홍보 행사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판단되는 경우 그 기업은 후원기업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사) 협회에서는 경남▶▶▶밴드가 2017년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신청('17. 7.19.)한 사업내용이 도민들에게 균등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경남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용 취지와 다른 후원기업 사내 기념행사 공연과 관련한 내용이었지만 이에 대해 지원 적합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7. 9.14 ~9.15.에 「2017 매칭펀드사업 2차서면 심사위원회」 심의자료로 상정,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지원단체로 승인하게 해 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당초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게 매칭사업비 8,000천원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으며 후원기업이 자체예산으로 추진 해도 될 사내행사를 기부금 명목을 빌어 사업을 추진하고 기부금관련 세제혜택을 받게 하는 등 사업계획 심사소홀로 인해 지원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부적정 사업 추진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예술단체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후원기업 세금혜택
			계	기업지원금	매칭지원금		
2017	경남▶▶▶ 밴드	♡♡♠♠테크 창립 30주년 기념식	8,000	5,000	3,000	축하예배, 회사창립 기념행사 등	500

※자료 : (사) 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협회 회장은

- ① 2017년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사업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시 남성합창단의 「 교포 위로 해외연주사업비」 중 도비 보조금 4,375천원을 「회수」 하여 경남도로 반납 조치하시고(시정),
-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지원단체 선정 시 관계자 직무교육 및 심사위원 사전교육과 사업 종료 후 정산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 의 요 구

제 목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사업비 심사 및 정산 부적정  
소 관 기 관 (사)○○○○○○○○협회  
조 치 기 관 (사)○○○○○○○○협회  
내 용

### 1. 업무개요

(사)○○○○○○○○협회는 도민들에게 균등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기업이 후원하는 예술단체에 도비를 매칭 지원하는 「○○○○○○○○ 매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 매칭펀드 사업비 사용 지침」에 따르면 지방재정법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17. 9.25. 시행)」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 매칭펀드 사업비 사용 지침」에 따르면 지원사업과 관련 없는 장비구입은 목적 외 집행으로 분류되어 집행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 3. 위법부당 사항(확인된 문제점)

#### 가. 사업계획 심사 소홀 및 용도 외 사용

(사)○○○○○○협회에서는 통영○○미술관에 지원한 2017년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비에 대해 이번 감사기간 동안 확인한 결과, (사)○○○○○○ 협회는 아래 [표 1] 과 같이 목적사업인 한국현대○○작품전과 관련 없는 복합기 구입을 계상한 통영○○미술관 사업신청서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심사위원회 심의자료로 상정하여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지원단체로 승인하게 해 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도민들에게 균등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당초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게 매칭사업비 3,110천원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

[표 1] 용도 외 사용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예술단체	사업명	사업비			용도 외 사용내역		
			계	기업지원금	매칭지원금	일시	내용	금액
2017	통영○○ 미술관	17 한국현대○○작품전	30,000	15,000	15,000	17.5.8.	복합기 구입	3,110

※ 자료 : (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 나. 수익금 발생 단체에 대한 심사 및 정산검사 소홀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은 도민들에게 균등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기업이 후원하는 예술단체에 도비를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과 2017년 ○○○○○○○ 협회사업(매칭펀드) 추진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의 반환 또는 수익금 사용용도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사)○○○○○○협회에서는 아래 [표 2] 와 같이 입장료 징수로 수익금 발생이 예상됨에도 수익금 예정 수입을 미계상한 지원단체의 2017년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계획서에 대해 매칭비 감액 미 조치 등 예술지원 매칭펀드 지원단체 심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후 사업 완료 후 수익금 금액과 사용용도를 미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사)○○○○○○협회에서 경남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의 취지인 문화나눔(균등 문화 향유)을 퇴색케 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표 2] 심사 및 정산 검사 소홀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예술단체	사업명	사업비			입장료 내역
			계	기업지원금	매칭지원금	
2017	♫♫◆◆양상블	돈 파스칼테(오페라)	23,000	15,000	8,000	R 5만원
	☺☺웃오케스트라	코지판 두테(오페라)	12,000	8,000	4,000	R 3만원
	♫♫성악회	사랑의 묘약(오페라)	24,000	15,000	9,000	R 5만원
	☒☒오페라단	돈 파스칼테(오페라)	24,000	15,000	9,000	어른 2만원

※ 자료 : (사)○○○○ 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 협회 회장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지원단체 선정 시 관계자 직무교육 및 심사위원 사전교육과 사업 종료 후 정산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 의 요 구

제 목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사업 지원금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사)○○○○○○○○협회  
 조 치 기 관 (사)○○○○○○○○협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사)○○○○○○○○협회는 2017년에 [표]와 같이 도민들에게 균등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기업이 후원하는 예술단체에 도비를 매칭 지원하는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술단체	사업명	사업비			심의일자
			계	기업지원금	도·시·비지원금	
계			112,800	73,800	39,000	
2017	○○○○회	제5회 ○○○○상	25,000	15,000	8,000 (시비 2,000)	'17. 3.28.
	경남○○○○문학회	경남○○○○협회 연말총회	8,000	5,000	2,000 (시비 1,000)	'17. 3.28.
	♣♣♥♥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제4회 ♣♣♥♥미술대전	50,000	35,000	15,000	'17. 3.28.
	○○○○보존회	섬김 ○○○○공연 대회	8,000	5,000	2,000 (시비 1,000)	'17. 3.28.
	함안○○○○협회	제○○회 영호남 ○○○○ 공연 등	21,800	13,800	8,000	'17. 3.28.

※자료 : (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법령(판단기준)

「○○○○○○○○협회사업(매칭펀드) 추진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등의 회계관련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5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경남도 ○○▣▤▥ 매칭사업 운용계획」에 따르면 도·시군 지원금은 단체 운영비, 시상금, 장학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단체 운영비는 기업지원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사)○○▣▤▥협회에서는 예술지원 단체로부터 지원금을 시상금과 단체 운영비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어야 했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 가. 사업계획 심사 부적정

그런데도 (사)○○▣▤▥협회에서는 예술단체에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도·시군 지원금은 시상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문화예술행사 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나 위 [표]와 같이 예술단체에서 시상금 사용용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심사위원회 심의자료로 상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매칭펀드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부적정하게 승인하도록 하였다.

#### 나. 지원금 용도 외 사용

(사)○○▣▤▥협회에서는 예술단체가 2017년 매칭사업 도비 지원금을 문화예술행사 비용에 사용하지 않고 [표 1]과 같이 집행불가 항목인 ‘시상금’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정산서를 제출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정산 적정하다고 그대로 인정해 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예술행사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도비 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지원금 용도 외 사용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술단체	사업명	사업비	사용용도	용도 외 사용금액
계			112,800		49,088
2017	♫♫♫회	제5회 ♫♫♫상	25,000	시상금	5,456
	경남☺☺문학회	경남♫♫협회 연말총회	8,000	시상금	2,192
	♣♣♥♥ 미술대전운영위원회	제4회 ♣♣♥♥미술대전	50,000	시상금	32,504
	☺☺☺☺ 보존회	섬김 ☺☺공연 대회	8,000	시상금	3,080
	함안♫♫협회	제회 영호남 ♫♫ 공연 등	21,800	시상금	5,856

※ 자료 : (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다. 운영비 초과 집행**

(사)○○○○ 협회에서는 쉐 & 미술협회에 매칭펀드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기업 지원금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에도 [표 2]와 같이 운영비를 사무차장 인건비로 6,966천 원을 집행하여 466천 원을 용도 외로 초과집행한 정산서를 제출 받았지만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정산 적정하다고 그대로 인정해 준 사실이 있다.

[표 2] 운영비 초과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술단체	사업명	사업비			운영비 집행금액	초과 집행금액	
			계	기업지원금	매칭지원금			자부담
2017	쉐 & 미술협회	쉐 & 미협 학생미술 실기대회 등 5개사업	22,074	13,000	8,000	1,074	6,966	466

※ 자료 : (사)○○○○ 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 협회 회장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칭펀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심의를 철저히 하시고, 경남예술지원매칭펀드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 의 요 구

제 목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도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사)○○○○○○○○협회  
 조 치 기 관 (사)○○○○○○○○협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사)○○○○○○○○협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표]와 같이 기업과 예술의 만남을 위한 결연식을 개최하였다.

[표] 결연식 개요

(단위 : 명, 천원)

행사명	일시	장소	참석 인원	사업비		
				계	도비	자부담
계				114,267	69,000	45,267
2015 결연식	2015. 9.16.(수) (18:30~20:30)	창원 ㉸㉸㉸컨벤션	210	39,933	25,000	14,933
2016 결연식	2016. 9.21.(수) (18:00~19:40)	창원 ㉸㉸㉸컨벤션	210	36,940	22,000	14,940
2017 결연식	2017. 9.21.(목) (18:00~19:40)	창원 ㉸㉸㉸컨벤션	220	37,394	22,000	15,394

※자료 : (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 2. 접대성 경비 초과 집행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협회 운영비 지원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

「○○○○○○○○협회 운영비 지원 보조금 교부조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5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결연식 행사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만찬비용 등 접대성 경비는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집행했어야 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협회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업과 예술의 만남을 위한 결연식을 개최하면서 행사 참석자에게 아래 [표 1]과 같이 만찬비 1인당 4만원을 초과한 집행으로 5,597천 원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표 1] 만찬비(접대성 경비)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명, 천원)

사업연도	집행일자	용도	제공인원	집행금액	초과집행금액	부적정 내용
계				31,197	5,597	
2015	'15. 9.17.	행사 만찬비	210	10,122	1,722	1인 4만원 초과집행
2016	'16. 9.23.	행사 만찬비	210	10,125	1,725	1인 4만원 초과집행
2017	'16. 9.21.	행사 만찬비	220	10,950	2,150	1인 4만원 초과집행

※자료 : (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 3. 사업비 용도 외 사용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협회 운영비 지원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

「○○○○○○협회 운영비 지원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하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5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협회에서는 2015년 결연식 행사계획에 포함된 연주회를 진행하면서 연주자들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전연습장소(☺☺대학교) 유료주차권을 구입·제공하는 등 행사 외 부대비용을 별도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없이 아래 [표 2]와 같이 사업비를 행사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

[표 2] 사업비 용도 외 사용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출일자	용도	사용내역	집행금액	부적정 내용
2015 결연식	'15. 8.28.	연주자들 연습장소 주차권 구입(☺☺대학교)	주차권 300매 구입	300	사업계획 불포함 대가지급으로 사전 연습 등의 부대비용 보전 불가

※자료 : (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4.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협회 운영비 지원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

「○○○○○○협회 운영비 지원 보조금 교부조건」,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사)○○○○○○협회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결연식 행사를 개최하면서 보조금 집행 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sup>1)</sup>를 제외하고는 전용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아래 [표 3]과 같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3] 보조금 전용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미사용 현황

(단위 : 천원)

사업연도	지출일자	집행금액	사용내역	비고
계		24,763		
2015	'15. 9.18.	6,300	행사기획 및 진행	계좌이체
	'15. 9.18.	902	초청장 제작비	계좌이체
	'15. 9.18.	2,098	홍보 인쇄물 제작비	계좌이체
2016	'16. 9.26.	913	인쇄비	계좌이체
	'16. 9.28.	1,850	초청장 및 사진케이스 제작	계좌이체
2017	'17.10.17.	6,500	이벤트업체 행사 진행비	계좌이체
	'17.10.17.	6,200	인쇄물 제작	계좌이체

※자료 : (사)○○○○○○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협회 회장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담당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 의 요 구

제 목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사)○○○○○○○○협회

조 치 기 관 (사)○○○○○○○○협회

내 용

### 1. 업무개요

(사)○○○○○○○○협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업무출장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출장의 기본규정은 인사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협회 인사규정」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25조에 따르면 직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는 항상 부하직원의 동향에 주의하여 근무태만이나 과실이 없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하고,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근무원칙이며, 9시 이전에 출근하여 9시부터는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보고를 사전에 제출하여 출장명령을 승인 받아야 하며, 출장용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고, 출장 귀임 후 3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출장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출장명령을 승인 받아야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기간(2018.7.23.~7.26.) 동안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협회 전무(●●●●, ☺☺☺)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협회에서는 서울 등 관외지역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면서 [표 1]과 같이 사전에 출장명령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추정만 할 수 있을 뿐 출장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실제 출장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직원 복무관리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출장 명령승인 없이 출장수행 현황(추정)

출장일자	출장자	출장지	출장목적	비고
계	19건			
2015-05-20	●●●(전무)	서울	-	
2015-09-18	●●●(전무)	하동	-	
2016-04-23	●●●(전무)	함안	-	
2017-02-16	☺☺☺(전무)	부산	-	
2017-02-16	☺☺☺(전무)	부산	-	
2017-02-24	☺☺☺(전무)	창녕	-	
2017-03-02	☺☺☺(전무)	부산 기장군	-	
2017-03-07	☺☺☺(전무)	통영	-	
2017-03-22	☺☺☺(전무)	함안	-	
2017-04-03	☺☺☺(전무)	부산	-	
2017-04-07	☺☺☺(전무)	진주	서부청사 업무협약	
2017-04-16	☺☺☺(전무)	부산	-	
2017-04-18	☺☺☺(전무)	진주	서부청사 업무협약	
2017-04-19	☺☺☺(전무)	하동	-	
2017-05-15	☺☺☺(전무)	하동	-	
2017-05-28	☺☺☺(전무)	하동	-	
2017-07-14	☺☺☺(전무)	부산	-	
2017-07-25	☺☺☺(전무)	진주	서부청사 업무협약	
2017-08-03	☺☺☺(전무)	부산	-	

※자료 : (사)●●● 협회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 협회 회장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복무에 대한 교육 및 수시 복무 관리 감독과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출퇴근 및 출장 확인 등 복무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